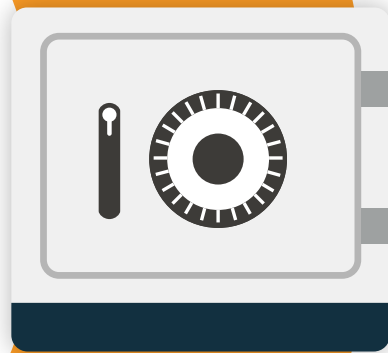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제도

TECH ESCROW

자금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입니다.

귀사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요?
거래 중 기술 공개에 대한 요구를 받으셨나요?
혹은 경쟁사로의 기술유출이 염려되셨나요?

귀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비공개로 보호하여 기술개발 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귀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세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기술보호전담기관으로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술자료임치란?

기술자료 임치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이며,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치된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지원(수수료전액)하여, 사업화 자금 마련(담보대출)과 기술거래가 가능합니다. 17년 말 기준 기술임치 누적 43,868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나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철저한 통제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임치금고에 이중화 보관됩니다.

임치**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규계약은 연 30만원, 갱신 계약은 연 15만원입니다.
(창업·벤처·혁신형기업 할인 시,
연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입니다.)



무엇에 **근거**하나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받아 기술개발 및 보유사실을 입증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치계약은 온라인(www.kescrow.or.kr) 또는 오프라인(재단방문)으로 진행 할 수 있으며, 단, 개인사업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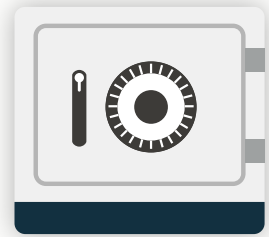
- 타 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이용효과

| 개발기업(중소기업) | 사용기업(대기업 · 공공기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유출 사전예방 •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 분쟁 시 기술 개발 · 보유 사실 입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업이 파산, 폐업 시 (특약조건해당 시) 지속적인 사용 보장 •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술임치 실적 반영 배점 1점 |

임치금고

임치된 기술자료는
안전하게 이중화 보관됩니다.



이중 철제 외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완벽 차단

독립된
설비시스템

최적의
보관시스템

항온 · 항습, 화재감지
및 환경정화 시스템
상시 가동

철저한
통제시스템

-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및 3중 잠금장치
-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2개소의
금고 운영

20km 이상 떨어진
원격지 금고에
임치물을 이중화하여 보관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데이터(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 제조방법 • 시설 · 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 · 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 ·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계약유형

삼자간

사용기업이 1개 법인 경우 계약 체결



- 개발(수탁)기관이 단일 사용기업에게 기술을 납품 · 공급하는 경우, 삼자가 합의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기업: 임치할 기술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선스 계약을 한 기업(개발사 · 기관은 사용기업 아님)

양자간

사용기업이 없거나 1개 법인 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



- 사용기업이 없는 경우의 계약 유형 혹은 개발(수탁)기업이 다수의 기업에게 기술을 납품 · 공급하는 경우
- 개발기업과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이 먼저 임치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사용기관을 편입하는 계약 유형

임치계약절차

> 온라인 (www.kescrow.or.kr)



1. 회원가입 및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

-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
- ※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오프라인 계약 체결만 가능



2. 임치 계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정보이용 동의 후 신규 기술임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수수료 납부

- 신청서 승인 후 [신청내역]에서 장비구비에 담아서 결제
- ※카드 또는 가상계좌 일시금 납부



4. 임치물 제출

-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파일을 업로드
- 최대 2GB, 100개까지 가능
- 1회 전송 가능



5. 전자서명

- 개발기업 - 참여기업 - 사용기업 - 임치센터의 순서로 진행



6. 계약 체결 및 임치증서 출력

- [마이페이지] - [계약내역]에서 임치증서 출력

> 오프라인 (기술자료 임치센터 방문)



1. 계약 신청서 접수

- [임치센터 홈페이지] - [이용서식] - [신청서] 및 [계약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접수(escrow@win-win.or.kr, 제목: 신규 오프라인 신청_기업명)



2. 수수료 납부

- 사전 계좌이체 또는 방문 시 카드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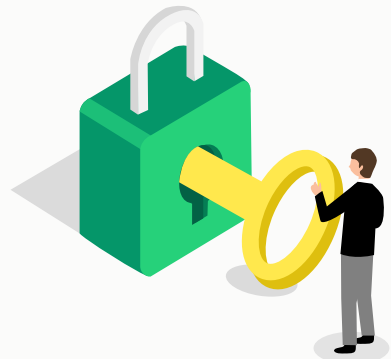
3. 임치물 및 구비서류 준비

- 동일한 임치물 2개 (예: 동일 USB 2개)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 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제출



4. 방문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수령

- 계약서 날인 및 임치물 봉인 후 임치증서 수령



임치 수수료

| 구분 | 계약유형 | | 수수료(건/년) | 비고 |
|----|-------|-----|-------------------------------|--------------------------|
| 일반 | 신규 | 삼자간 | 300,000원 *할인 적용 시 200,000원 |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
| | | 양자간 | | |
| | 갱신 | 삼자간 | 150,000원 *할인 적용 시 100,000원 |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
| | | 양자간 | | |
| 기타 | 계약편입 | | 50,000원 | 양자간 임치계약의 사용인으로 편입 |
| | 임치물추가 | | 50,000원 | 임치한 기술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

| 할인대상 | | |
|--|--|---------------|
| ※ 단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만 할인 적용(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 | |
| 대상 | 내용 | 증빙 |
| 창업기업 |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 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 |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할인증빙

〈창업기업(7년 미만)〉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사례

기술탈취 방지



화학연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제안을 받아 개발한 독자기술로 월 1,0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

☞ 설비의 건설 단계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기술자료 공개를 강요받던 중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대기업 B사에 이를 통보하여 **기술탈취를 방지**

기술유용 방지



휴대폰 안테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C사는 대기업 D사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개발한 제품을 납품하던 중

☞ 대기업 D사가 타 협력사를 통해 **동일 제품을 개발·납품받으려는 동향을 파악한 후 임치한 기술임을** 대기업 D사에 **통보하고 조정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

거래 신뢰성 확보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E사는 모 공기업 F사와의 용역계약체결 사항에 기술임치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처음으로 기술임치제도를 접하게 됨

☞ 이후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함으로써 **거래기업에 유지보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기술자료 백업



중소기업 G사가 보유한 연구·기술자료가 랜섬웨어로 인해 복구 불가, 대표자만 보유하고 있던 기술개발자료를 하드웨어 오류로 인해 데이터 손실

☞ 바이러스, 하드웨어 손상 등으로 인한 자료 손실을 **임치물(기술자료) 열람·복사를 통해 핵심 기술자료 보전**

사업화 자금 마련




- 의료용 부품기업 제조 중소기업 H사는 **임치활용제도를 통해 추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납품할 수 있었고, 기술임치를 통해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음**
- 상하수도 분야 제조 중소기업 I사는 임치활용제도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받고 시제품 제작비용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며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서비스로 평가**

* 임치활용제도는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치제도 반영현황

기술자료 임치제도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무화 반영

◀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국가소프트웨어 사업 참여하는 경우
기술임치 이용 사업자에게 기술성
평가 시 최대 3점까지 가점 부여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반영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내
R&D 비용으로 임치수수료 계상 가능

• 저작권법에 임치제도 반영
※ SW부문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임치업무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임치의무화 반영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시
최대 3점 가점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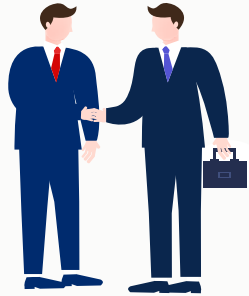
◀  **조달청** ▶

 **방위사업청** ▶

• 방위사업 관리규정반영

• SW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
•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
•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
•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 ▶



임치 활용 지원 사업

임치기술 사업화 등 활용지원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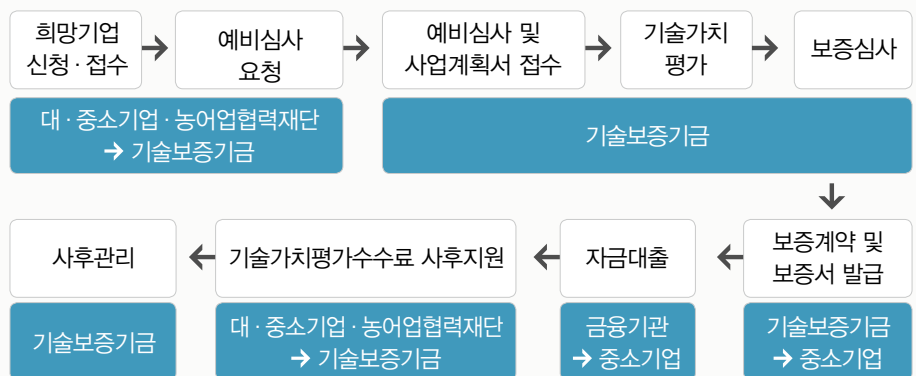
- **목적**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담보대출 지원
- **지원내용**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율 등의 비용 절감
- **지원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중인 기업 (임치 만료시 보증서 기간연장 불가)
 - 임치기술 기본공시정보제공 동의기업

* 당해 기술 적용 매출 시현여부와 관계없이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단,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에서 '활용지원' 신청
 - 기술임치계약을 완료한 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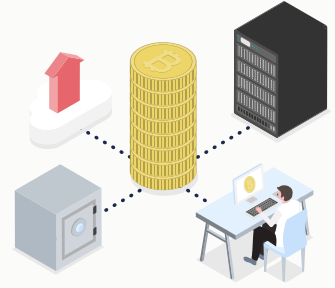
〈 업무흐름도 〉



▶ 문의처

- **기술자료 임치센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화) 02-368-8762, (이메일) escrowbiz@win-win.or.kr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용자규모 : 4,900억원

▶ 신청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용자범위

- 개발기술사업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용자조건

- 개발기술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클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용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사업화 자금 마련이 가능한 기술보호 지원제도입니다.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www.kescrow.or.kr

